■ 지방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17호서식(전산용 1)] <개정 2021. 12. 31.> (앞쪽)

☜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우체국

바코드 18mm
음성변환용(외부)

보내는 사람

과세번호			
담당자		문의처	

받는 사람

우편반송용 바코드 17mm
우편반송용

과 세 근 거

바코드 18mm
음성변환용(내부)

납 부 장 소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가산금과 중가산금
「지방세징수법」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(지방세액의 3%)이 가산되고,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) 중가산금(지방세액의 0.75%)이 추가됩니다. ※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+ 가산금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중가산금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0075 × 경과월수)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

※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

∞ 시·군 _____ (수납은행 확인용)

납세자:

기관번호	세목

납세연월기	과세번호

전자납부 번 호	

납기 내: 까지

세 목	납기 내 금액
합 계	

납기 후: 까지

납기 후 금액	

수납은행용 바코드
수납용

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

∞ 시·군

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(분) (납세자용)

납세번호	과세기관	검	회계	과목	세목	연도	월	구분	읍면동	과세번호	검

납 세 자: 납세자번호:

주 소:

지 방 세

과세대상:

수납용 바코드
수납용

세 목	납기 내 금액	납기 후 금액	부과내역(과세표준)	세율
합 계				

납기 내
까지

납기 후
까지

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

년 월 일 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

담당자: 문의처:

※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전자납부 번 호	

210mm×297mm(CP지 90g/㎡)

유의사항

1. 지방세액 산출근거

과세근거	▪「지방세법」제23조제2호, 제24조제2호 및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
납세의무자	▪「지방세법」제24조제2호에 따른 면허를 받는 자(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)
가산금과 중가산금	▪「지방세징수법」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(지방세액의 3%)이 가산 ▪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) 중가산금(지방세액의 0.75%)이 추가

2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(50일 이내)이 고지되며,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.

3.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(시・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・군수에게, 시・도세의 경우에는 시・도지사에게)에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■ 지방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17호서식(전산용 2)]

(앞쪽)

☜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바코드 18㎜
음성변환용(외부)

과세번호			
담당자		문의처	

받는 사람

우편반송용
바코드 17㎜
우편반송용

과 세 근 거

납 부 장 소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가산금과 중가산금
「지방세징수법」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(지방세액의 3%)이 가산되고,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(최대 60개월) 중가산금(지방세액의 0.75%)이 추가됩니다. ※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+ 가산금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중가산금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0075 × 경과월수)

자동계좌이체 납부 통지서

귀하께서 납부하실 지방세는 아래 신청하신 거래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어 납부됩니다.

바코드 18㎜
음성변환용(내부)

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:
예 금 주:
출 금 계 좌:
성 명:

※ 자동이체일은 년 월 일 입니다.

○ 납부기한 마감일 전에 예금 잔액을 확인하십시오. 예금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이체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관할 시·군·구에 확인 후 직접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○ 지방세 납부명세는 예금통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귀하께서는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하셨으므로 이 고지서로 지방세 납부장소(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)에서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.

∞ 시·군

납세고지서 (분) (납세자용)

납세번호	과세기관	검	회계	과목	세목	연도	월	구분	읍면동	과세번호	검

납 세 자: 납세자번호:
주 소:

과세대상:

세 목	납부할 세액	부과내역(과세표준)	세율
합 계			

납부기한
까지

담당자 문의처

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

※ 지방세 납부결과는 고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210㎜×297㎜(CP지 90g/㎡)

유의사항

1. 지방세액 산출근거

과세근거	▪「지방세법」제23조제2호, 제24조제2호 및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
납세의무자	▪「지방세법」제24조제2호에 따른 면허를 받는 자(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)
가산금과 중가산금	▪「지방세징수법」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(지방세액의 3%)이 가산 ▪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) 중가산금(지방세액의 0.75%)이 추가

2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(50일 이내)이 고지되며,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.

3.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(시・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・군수에게, 시・도세의 경우에는 시・도지사에게)에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